

7. 住宅建設基準等に 관한 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8號 1995. 2. 2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 한다.

제3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되 제4항(중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서식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호(또는 명칭)·대표자 또는 영업소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주요시설 및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설장비보유명세서 1부

3. 영업소소재지 또는 공장대지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대지증명서 1부

제17조 제3항중 “계량법 제29조의2”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1호중 “연 2회이상(시멘트가공제품은 연 4회이상)”을 “연 1회이상”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매반기 말일”을 “매년도 12월말일”로, “다음달 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를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의3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

령”으로 한다.

제22조의4 제3항 및 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

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중 “시지역 및 수도권내 읍·면과 기타지역”을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과 기타지역”으로 하고, 동표 제4호의2.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2.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 · 약 국 | 1개소이상 | 2개소 이상 |
| | · 의 원 |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 |
| | · 생활편익시설 |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 |

별표 1제5호의2. 주민소득을 위한 시설란의 시설의 규모란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호의 3. 생

활편익을 위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3.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 · 약 국 | 1개소이상 | 2개소이상 | 5천세대이상의 단지에 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치계획에 따라 병원 부지를 확보한다. |
| | · 의 원 | - |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 |
| | · 생활편익시설 |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 | |

[별표 6]·[별표 6의2]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중 “건설부인정 제 호”를 각각 “건설교통부인정 제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의4 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 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주택자재에 대한 품질검사회수를 축소하고, 각종 신고서등의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일선행정기관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고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멘트 벽돌등 5개품목의 주택자재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의 정기검사와 2회이상 또는 4회이상의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1회이상의 정기검사와 1회이상의 수시검사를 받도록 그 회수를 축소조정함(제19조 제1호).

나. 시·도지사는 매반기별로 주택자재에 대한 품질검사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범위도 모든 검사대상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던 것을 불합격업체 또는 검사에 불응한 업체에 대하여만 보고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일선행정기관의 업무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5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

〈건설교통부 제공〉

공기보다 품질생각 이익보다 기술생각